

# 태광산업주식회사 정관

## 제 1 장 총 칙

제 1 조(상호) 본 회사는 상호를 태광산업주식회사라 칭함.

제 2 조(사업목적) 본 회사는 하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함.

- ① 합성섬유 및 합성섬유방적사 제조, 가공 및 판매업
- ② 섬유 표백, 염색 가공업
- ③ 면 방적사 및 면 혼방사 제조, 판매업
- ④ 면직물, 혼방직물 및 경편직물 제조, 판매업
- ⑤ 수출입 업무 및 광산업
- ⑥ 부동산임대업
- ⑦ 석유화학제품 및 동 부산물 제조, 가공 및 판매업
- ⑧ 부동산개발 및 시행사업, 분양업
- ⑨ 호텔, 리조트 등 숙박시설의 개발, 운영 및 임대업
- ⑩ 해외 건설공사 및 개발사업
- ⑪ 주택건설사업
- ⑫ 토지개발업
- ⑬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 ⑭ 부동산 및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대한 투자, 시행 및 관련 사업
- ⑮ 부동산투자회사(리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및 기타 특수목적 법인(SPC)에 대한 출자, 지분투자 및 운영참여업
- ⑯ 금융업, 투자업 및 기타 상기 목적사업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 ⑰ 블록체인 기반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판매, 암호화자산의 매매 및 중개업
- ⑱ 화장품의 제조, 매매 및 이와 관련한 서비스 상품의 매매
- ⑲ 플라스틱 포장재료의 제조 및 판매
- ⑳ 원전, 태양, 풍력, 지열에너지, 기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 ㉑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 3 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 4 조(광고방법) 본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www.taekwang.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5 조 삭 제

## 제 2 장 자본 및 주식

제 6 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와 일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백육십만주로 하고 일주의 금액은 오천원정으로 한다.

제 7 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사만주로 한다.

제 8 조(주식의 종류)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 9 조(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이하 “우선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수는 삼십만주로 한다.

② 우선주식은 발행시에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배당에 있어서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③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1% 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참가적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또한, 누적적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④ 이 회사는 제1항 소정의 발행할 주식 수의 한도 내에서 우선주식 중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주주의 전환청구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되거나, 존속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보통주로 전환되는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청구기간 또는 존속기간은 1년 내지 10년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가 정하고, 전환시 우선주식 1주는 보통주식 1주로 전환되는 것으로 하되,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는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의 발행시 전환조건의 조정사유를 정할 수 있다.

⑤ 이 회사는 제1항 소정의 발행할 주식 수의 한도 내에서 우선주식 중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주주의 상환청구에 따라 현금으로 상환하거나 상환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현금으로 상환하는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익으로써만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기간은 1년 내지 10년의 범위 내에서,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발행시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가 정한다.

⑥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⑦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은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배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우선주식에 대하여 당해 사업년도 이익에서 소정의 배당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이사추천위원회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 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 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제11조(명의개서대리인)

① 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제12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으로 하고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13조(주금불입 지연이자) 주금의 불입이 지연될 시는 불입기일 익일부터 불입완료일까지 본 회사 소정의 율로서 지연이자를 징수함.

#### 제14조(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① 본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및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의 2주

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 3 장 사 채

제15조(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의2(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5천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5천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의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제16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5천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5천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1호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의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18조(소집시기 및 소집권자) 본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매 결산기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서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제18조의1(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목적사항을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

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대리인에 위임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이에 임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며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2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결의권은 일주에 대하여 일표로 한다.

제23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 5 장 이사 • 이사회

제24조(이사의 수) ①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②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한다.

② 제1항의 이사 선임 시에는 일주당 일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상법상 집중투표 방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27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서 대표이사 1명을 선임한다. 단,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를 수명 두어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에 보할 수 있다.

제28조(이사의 직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회사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위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동일한 직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선위로 한다.

제29조(이사회 의 소집 및 결의방법)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장에 임하고 회일 1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하며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제29조의2(위원회) ①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감사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ESG위원회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0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30조의2 삭 제

제30조의3 삭 제

제30조의4 삭 제

제30조의5 삭 제



제30조의6 삭제

제30조의7 삭제

## 제 6 장 감 사 위 원 회

제30조의8(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본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관련 법령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30조의9(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 감사위원회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제 7 장 계 산

제31조(사업년도) 본 회사의 결산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함.

제31조의2(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①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의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제32조(이익금의 처분) 본 회사는 매 결산기에 총익금으로부터 총손금을 공제한 잔액으로서 당기이익으로 하고 이에 전기이월금을 가산하여 하기와 같이 처리함.

1. 이익준비금

2. 배당금

3. 임원상여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 이익잉여금처분액

6. 기타 법정적립금

7.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33조(배당기산일) ① 본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 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배당금을 청구치 않고 5년을 경과할 시는 당사의 소득이 된다.

## 부 칙

제34조 본 정관에 규정이 무한 사항은 상법 기타 법령 및 관례에 의함.

제35조 본 회사 발기인의 주소, 성명은 본 정관말미기재와 여함.

제36조 본 회사 설립 시에 있어서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출자에 목적인 재산기가격 및 이에 대하여 발급할 주식의 종류 및 수는 하와 여함.

기

1. 방직부수기일절 연사기 200추, 조합기 120추 1대
2. 관권기 1대
3. 연사기 2대
4. 정경기 2대
5. 직 기 25대
6. 덮뿌기 1대
7. 카-트정방기 1대
8. 콘덴사 소모기부속 1대
9. 물정방기 1대
10. 발전기 1대

이상 가격금오백만원정

이에 대하여 발급한 주식오천주

금오백만원 불입제의 보통주식오천주

발기인 이 임 용

제37조 본 회사 설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속한 재산기가격 및 양수인의 성명 하와 여함.

부산시 부산진구 문현동 361번지의 11

1. 대 401평

동소 361번지의 6

1. 대 399평

우양증지상 제2호

1. 연와조아연증평가건공장 1동

건평 180평

부 속 조표진 4896호

1. 목조아연증평가건식당급숙직실 1동

건평 20평

부 속

1. 철근콘크리트 및 연와아연증이계건사무실 1동

건평 36평

이계평 36평

1. 연와아연증평가건발전실 1동

건평 육평구합육작

부 속

1. 연와조아연증평가건발전실 1동

건평 일평오합

부 속

1. 연와조아연증평가건편소 1동

건평 3평

제38조 본 회사의 부담에 관한 설립비용은 금이십만원 이내로 함.

제39조 발기인이 받을 보수의 금액은 금오천원으로 함.

제40조 본 회사 설립시에 발기인이 인수한 주수 및 성명 하와 여함.

단, 제36조의 주식을 포함함.

주식	이만사천주	이	임	용
주식	사천주	이	선	애
주식	이천주	이	기	완
주식	이천주	정	홍	식
주식	이천주	이	임	생
주식	이천주	이	기	필
주식	이천주	이	석	천

주식 이천주 이 기 화

1. 본 회사발기인의 주소, 성명 하와 여함.

부산시 부산진구 문현동 361번지

이 임 용

부산시 동구 좌천동 519번지

이 선 애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297번지의 16호

이 기 완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474번지의 120호

정 흥 식

동소동번지

이 임 생

부산시 동구 수정동 288번지

이 기 필

부산시 동구 범일동 1315번지

이 석 천

부산시 동구 좌천동 699번지

이 기 화

상 태광산업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하에 발기인 기명날인함.

서기 1961년 9월 일

발 기 인	이	임	용
	이	선	애
	이	기	완
	정	흥	식
	이	임	생
	이	기	필
	이	석	천
	이	기	화

하 정 관 변 경 함.

서기 1969년 8월 일현재

1975년 8월 일현재  
1975년 11월 일현재  
1975년 12월 일현재  
1976년 10월 30일현재  
1977년 10월 29일현재  
1978년 10월 30일현재  
1983년 10월 29일현재  
1984년 10월 30일현재  
1986년 10월 30일현재  
1993년 10월 30일현재  
1996년 2월 29일현재

(제20조, 제25조, 제32조의 개정 규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

1999년 3월 12일현재  
2000년 3월 17일현재  
2007년 2월 28일현재  
2010년 3월 12일현재  
2011년 3월 18일현재  
2012년 3월 23일현재

(제9조, 제28조, 제30조의 2의 개정 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

2019년 3월 29일현재  
2024년 3월 29일현재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

2025년 10월 1일현재

(「조 번호 정리」 조항 순서 및 구조 변경에 따른 정렬 재배치)